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6

발의연월일 : 2024년 2월 1일

발 의 자 : 경수현, 김육영, 권영애, 김경이,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와 적용 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

조, 제4조)

다.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가사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위탁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관련 사항 심의·자문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함(안 제10조)

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일자리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를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성북구에

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 전략
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성북구 내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이 가사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고충 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가사노동자 정책 등의 심의·자문)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